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9 선고 2022가단864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찬욱

변 론 종 결 2022. 10. 28.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2. 3. 17. 접수 제302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외 C를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합계 4,386,255원 및 그중 원금 3,544,822원에 대한 2021. 2. 16.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는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21. 9.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2. 1.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F, C, G이 있다. 상속지분은 피고 3/9, F, C, G 각 2/9이다.

다. 피고와 C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직후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2. 3. 17.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9~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지하면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분 2/9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일산동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가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1969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50년 넘게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였다. 망인이 1995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과 피고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망인 사망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태로 상속분을 이전하는 사례는 흔하게 발견되며, 이는 보편적인 도덕관념, 생존한 배우자의 기존 생활양식 유지, 부부공동재산의 실질적 정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봉양 등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뿐 아니라,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도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자녀들이 피고의 여생을 위하여 뜻을 모은 결과로 보일 뿐 특별히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로 비춰지지 않는다.

③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D의 직원이 2019. 10. 24. C의 집을 방문하여 망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직원이 망인에게 방문 경위를 밝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설령 이를

밝혔다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또한, 원고가 2021. 10. 1. C에게 보낸 우편물을 피고가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피고가 성인 자녀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및 이에 대한 C의 인식 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만일 피고가 C의 재산 상태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C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

별지

별 지 목 록

1. 1 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근테크리츠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지층 601.710 m²1층 608.73 m²2층 588.48 m²3층 588.48 m²4층 588.48 m²5층 588.48 m²6층 588.48 m²7층 588.48 m²8층 588.48 m²9층 588.48 m²10층 588.48 m²11층 588.48 m²12층 588.48 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 10층 호

월근테크리츠조

134.970 m²

대지권의 목적만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 22433 m²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2433.0 분의 74,233

